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I. 기본사항

1.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형법

▣ 사기죄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준사기

제348조(준사기)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편의시설 부정이용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부당이득

제349조(부당이득)①사람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상습범 및 미수범 처벌

제351조(상습범)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

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 구성요건별 법정형 표

죄명		법정형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10년 이하 징역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당이득		3년 이하 징역
상습		1/2 가중
특경(사기)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이상	5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2.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위

가. 사기죄

- 사기(형법 제347조), 상습사기(형법 제351조), 특경법상 사기(특경법 제3조)를 설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 없음

나. 준사기(형법 제348조)

-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 기망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유형이고, 사기죄의

보충적 규정에 해당

- 설정대상에 포함함이 적절함

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범죄
-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 포함시키자는 견해 : ① 본질이 사기죄와 비슷하고, ② 인터넷·전화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범죄의 규제 필요성이 있음
 - 제외하자는 견해 : ① 기망, 착오, 처분행위를 전제로 한 범죄가 아니고, 사기죄와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범죄에 해당하여 사기죄와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② 법정형이 사기죄와 동일하나(10년 이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위 범죄가 제외되어 있어, 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기죄(3년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양형기준안에서 소유형분류를 이득금액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동일한 형량범위 표에서 포섭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③ 범죄의 발생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기초자료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기범죄 4,664건 중 110건만이 이에 해당되어 2.35%에 불과)
-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범죄가 아니나 사기죄와 본질이 유사하므로,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라. 편의시설 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2)

- 구성요건의 ‘유료자동설비에 대한 부정이용’ 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가 아니고, 경미한 범죄로서 법정형이 낮고(3년 이하 징역), 구공판 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수가 거의 없음

-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마. 부당이득죄(형법 제349조)

-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고(3년 이하 징역), 구성요건이 기망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발생빈도가 매우 낮음
-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바. 미수죄(형법 제352조)

-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규정이 있음
- 제1기 양형기준에서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미수범의 양형기준을 설정한 바 없음
-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3. 유형의 분류

가. 대유형 분류

- 최초 검토단계에서는 ‘일반사기’와 ‘특수사기’로 나누되 ‘특수사기’는 특수한 사기유형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와 ‘보험금사기’를 설정하여 별도의 형량범위와 양형인자를 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 그런데, 전화금융사기와 보험금사기의 소유형 분류를 조직가담 정도와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일정금액 이상의 사기범죄

에서 일반사기의 형량범위가 오히려 높게 되는 형량역전현상이 나타나며,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 중에서 전화금융사기와 보험금사기만 특수한 유형으로 볼 특별한 이유가 없고, 보험금사기는 일반사기와 형량에 차이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음

- 검토한 결과, ① 실제 판결사례에 비추어 보면 전화금융사기와 보험사기 중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역전현상은 기본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② 일반사기 이외에 특수한 사기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해서 규정해 두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신종사기수법이 유행하는 경우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특수한 사기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형량범위표와 양형기준표를 추가할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다양한 사기유형 중에서 유독 전화금융사기와 보험금사기만 특수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보험금사기는 실제 처벌형량이 다른 사기죄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유형 분류방안을 수정하기로 함
- ‘조직적 사기’를 특수한 유형의 사기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기범죄를 일반사기로 규율함

나. 소유형 분류

-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각 대유형 내에서, 소유형 분류는 ‘사기로 인한 법률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5단계 분류
 - 횡령·배임범죄에 관하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이득액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을 경계로 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
 - 사기범죄는 대표적 재산범죄이므로, 재산범죄인 횡령·배임범죄와 동일하게 이득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하였음

- ‘조직적 사기’에 관하여는 소유형을 이득금액이 아닌 다른 기준(조직내 역할분담, 행위태양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득금액이 일정액 이상 되는 경우(예컨대 50억원) 일반사기와 비교하여 형량범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형량범위를 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사기’와 동일하게 이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II. 형량범위 · 양형인자

1. ‘일반사기’

1) 개요

- 조직적 사기 이외의 모든 유형의 사기가 여기에 해당함
-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를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취급
- 소유형은 횡령·배임범죄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득금액에 따라 5단계로 분류

2) 형량범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제5유형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300억 원 이상)			
-------------	--	--	--

- 소유형 분류는 횡령·배임범죄에 관하여 시행 중인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사기로 인한 법률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5단계 분류
 - 일반사기의 범죄형태와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득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할 때 지나치게 세분류하게 되면 이득금액이 같더라도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높거나 낮게 조절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구체적인 형의 양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5단계 분류가 적절
 - ☞ 예컨대, ‘사기죄에 대한 피해금액별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운영지원단 조사자료)에 의하면, ‘2.피해금액별 평균형량(전체피해액 기준)’의 일반적범행의 이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평균형량이 7.083개월, 이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이 8.554개월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조직적·전문적범행에서도 이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평균형량이 12.2개월, 이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이 17.0개월인바, 이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여 이득금액 1억원 이하 구간을 보다 세분류하는 것은 형량범위 설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을 비롯하여, 5단계 이상으로 소유형을 세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함
 - ☞ 또한 위 자료에 의하면 이득금액 1억원 미만인 사건 비율은 일반적사건에서 58%[≒(289+65)/605], 전문적·조직적범죄에서 32%[≒(15+4)/59]임 → 이득금액 1억원 미만을 하나의 소유형으로 설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사건이 전체사건 중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음
 - 재산범죄인 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음
 - 그러므로 5단계로 소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에 비하여 형량범위를 다소 상향조정

-
-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를 기본적인 것으로 상정하였으므로, 같은 이득액의 횡령·배임범죄보다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다소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있다고 보았음
 - 기본영역 형량범위는 한단계 낮거나 높은 소유형의 기본영역의 형량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설정
 - 사기죄는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득금액이 높더라도 행위태양이나 범행수법이 경미하면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제1기 양형기준에서도 약한 유형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상한이 강한 유형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 대부분(횡령·배임범죄 등. 단, 뇌물범죄만 예외)
 - 뇌물죄는 행위태양이 단순한데 비하여, 사기죄는 행위태양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득금액이 높더라도 행위태양이나 범행수법이 경미하면 더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아서 뇌물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그 형량범위의 폭을 뇌물죄보다는 다소 넓혀야(뇌물죄는 형량범위 상·하한이 2년 차이 vs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은 형량범위 상·하한이 3년 차이) 할 뿐 아니라, 제2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상한 부분과 제3유형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 부분이 겹치도록 설정하는 것이 구체적 사건에서 적절한 양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득금액 액수에 정비례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득금액이 50억 이상인 제4, 5유형에서는 형량의 증가정도가 낮게 설정됨
 - 실제 판결사례를 검토해 보면, 이득금액에 비례하여 형량이 정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금액까지는 형량과 이득금액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이상의 이득금액에서는 형량과 이득금액
-

의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남

☞ ‘사기죄에 대한 피해금액별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운영지원단)의 ‘2.피해금액별 평균형량(전체피해액 기준)’을 보면 일반사기범의 이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평균형량이 7.083개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8.55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13.36개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27개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35개월, 300억원 이상의 평균형량은 37개월로 나타남. 위 제1,2유형은 기본영역 형량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3,4,5유형은 기본영역 형량범위보다 가볍게 나타나고 있고, 이득금액에 비례하여 형량이 정비례로 증가되지 않는 경향이 보이고 있음

- 사기범죄는 그 행위유형이 다양하고 범의의 확정성이나 피해자의 숫자, 상습성 등 고려해야 할 중요 양형인자가 많이 있으므로 이득금액에만 비례하여 형량을 증가시킬 수는 없음

3)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습성인 경우

	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행위 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인자표에 기재된 재산범죄에 전형적인 양형인자를 인용하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기범죄에 특유한 양형인자를 추가하였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는 횡령·배임범죄와 동일하게 설정
 - 사기죄의 경우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채무변제 약속만을 하고 합의한 뒤 재판이 끝난 뒤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감경인자는 ‘조건 없는 처벌불원’ 으로 수정하고, 아래의 일반감경인자 중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에 ‘조건부 처벌불원 또는 상당금액의 공탁’ 을 붙여서 같이 기재하여 두자는 의견도 제시됨
 - 검토결과, ①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거래로 인한 채권(예컨대, 대여금 채권) 또는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채권인데, 처분권주의 원칙상 사법상의 채권을 처분하는 것은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그 채권을 전액 변제 받던지 아니면 그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던지, 또는 일부는 변제받고 일부는 다른 재산으로 대물변제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무변제를 기한부로 유예하여 주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단순히 두 가지로만 분류하여 ‘조건 없는 처벌불원’ 과 ‘조건부 처벌 불원’ 으로 나눈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처분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보 전하려는 노력의 여지를 상당히 좁히고 제약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으며, ② 실제 재판에서 합의서 등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조건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를 일일이 법정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합의서 작성해 준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꺼리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매우 많은 경우 등), 법정에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조건 없는 처벌불원이라고 거짓의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므로, 처벌불원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았음

2. ‘조직적 사기’

1) 개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등
- 다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가 아니

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예컨대,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호 사전 의사연락 없이 여러 명이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 연결적인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는 하지만 조직적 사기로는 볼 수 없을 것임)

-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자료’에 의하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중 약 7~10%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 형법상 사기의 경우 ‘분업적·조직적 범행’ 여부를 기준으로 ‘없음’ 2,866명, ‘있음’ 213명이고(6.9%), 특경가법상 사기의 경우 ‘없음’ 194명, ‘있음’ 23명임(10.6%)

2) 형량범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 소유형 분류는 일반사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득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눔
- 조직적 사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는 취지에 따라 형량범위를 일반사기보다 상향조정
 - ☞ ‘사기죄에 대한 피해금액별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운영지원단)의 ‘2.피해금액별 평균형량(전체피해액 기준)’을 보면 조직적·전문적범행의 이득금액 5천만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12.2개월,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17개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19.4개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32.6개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평균형량은 29개월, 300억원 이상의 평균형량은 21개월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유형의 기본 영역의 형량범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 1심 선고판결 중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는 판결 100건을 분석한 결과, 제1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6월에서 3년의 분포를 보였는데 1건만이 4년이 선고되었으며 평균형량은 약 1년 6월이었으며, 제2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6월에서 3년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형량은 1년 7월이었고, 제3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1년 6월에서 4년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형량은 2년 6월이었으며, 제4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1년 6월에서 8년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형량은 4년 2월이었고, 제5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은 없었음
- ☞ 이와 같은 실제 판결사례에 비추어 보면 위의 형량범위 중 제3, 4, 5유형의 형량범위는 다소 높게 설정된 점이 있으나,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규범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있고, 일반사기의 형량범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이 설정함

3)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또는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성인 경우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노린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행위 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일반사기 양형인자와 비교할 때 조직적 사기에 적용되기 어려운 양형인자를 삭제하고, 판결문 분석을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에 적합한 양형인자를 찾아 추가함
-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은 일단 가중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가중인자로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를 설정하고, 조직 내에서 단순업무만 담당하는 피고인은 일단 감경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특별감경인자로 ‘단순가담’ 을 설정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과 일반사기의 양형인자표에는 ‘자수, 내부비리 고발’ 만 설정되어 있으나, 조직적 사기 유형에서는 그 특성상 사기의 수법과 범행내용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선

처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라는 양형인자를 부가함

Ⅲ.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p>도</p> <p>○피해회복 노력 없음</p>	<p>○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p> <p>○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p> <p>○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p>
--	-----------------------------	---------------------------------------------------------------------------------------------------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함
 - 특경가법 적용범위의 하한선인 5억원을 기준으로 삼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 기존 판결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로 판단하기 위한 실질 손해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

IV. 다수범죄의 처리

1) 문제의 소재

- 일반사기끼리 경합하는 경우 및 조직적 사기끼리 경합하는 경우에는 모두 이득금액 합산원칙을 적용하고, 상습사기죄로 처벌되어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일반사기의 습벽과 조직적 사기의 습벽은 같은 종류의 습벽으로 보아야 함)에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법원이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표를 선택하도록 함

- 그런데, 한 명의 피고인이 일반사기범죄와 조직적 사기범죄의 실제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검토할 필요 있음

2) 검토방안

▣ (제1안) 이득액 합산 처리

● 내용

- 일반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과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사기범죄의 형량범위표 또는 조직적 사기범죄의 형량범위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중 해당되는 소유형을 적용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감경-기본-가중)을 선택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이 방안은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내용에 따른 것임

● 문제점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어느 형량범위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일반사기 형량범위표를 적용하면 조직적 사기범죄로만 처벌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사기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량범위가 낮아지는 불합리가 발생 (예를 들어 조직적 사기범죄만 있는 경우 그 이득액이 7억 원이라면 기본영역이 4년~7년인

데, 여기에 이득액 1억원의 일반사기범죄가 추가로 발각되어 같이 처벌받는 경우 이득액을 합산하면 8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일반사기 형량범위 표를 적용하면 기본영역이 3년~6년으로 오히려 형량범위가 낮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함)

-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조직적 사기 형량범위표를 적용하는 경우 지나치게 형량범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다액의 일반사기범죄에 소액의 조직적 사기범죄가 추가되어 처벌되는 경우)
- 법원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상정가능하나,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양 형량범위표 모두 이득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량범위에 차이가 나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움 (이와 대비하여,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단 하나의 형량범위표를 설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 없음)
-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는 그 죄질이 서로 상당히 다르므로, 단순히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제2안) 일반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내용

-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결정하고,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결정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 제1기 양형기준 중 횡령·배임범죄의 동종경합범 이외의 나머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일반적인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 문제점

- 일반사기끼리 경합하는 경우 및 조직적 사기끼리 경합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에만 이중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이 일관되지 않음
- 이중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만 가중되고 하한은 가중되지 않음
- 상습사기죄로 처벌되어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표를 선택해야 할 것인데, 죄수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형량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함

3) 결론 : 일반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위 각 방안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제2안)이 보다 타당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았음
- 일반사기끼리, 조직적 사기끼리 경합하는 경우와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조직적 사기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한 이유가 범죄의 특성이나 죄질이 일반사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인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는 이중경합범과 유사하게, 즉 다

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양형의 대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보아야 함

- 하한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같은 사기범죄들 간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원칙적으로는 적절할 것이나 형량범위가 다른 두 종류의 사기범죄가 경합된 이상 이중경합범과 유사한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아야 함
- 죄수에 관한 판단에 따라 형량범위가 달라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아야 함

V. 관련 자료

1. 범죄유형

▣ 실제 사건에서 나타나는 사기의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음

나. 무전취식, 무전 PC방 이용

- 사안은 대부분 경미함
-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에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있음

다. 선불금 사기

- 대부분 계획적 범행임
-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반복성 여부, 동종전과 등이 주된 양형인자임

라. 투자금 사기

- ‘투자를 빙자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와 ‘투자금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로 실제로 투자를 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음

- 후자의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양형인자가 됨

마. 동업자금 사기

- 투자금 사기와 대체로 유사함

바. 차용금 사기

-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돈을 빌려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지 않으나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음
- 범행의 계획성 외에도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이 주된 양형인자임

사. 금융기관 상대 사기

- 차용금 사기와 대체로 유사함
- 피해자가 공공적 기능을 갖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용금 사기보다는 다소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분식회계, 가장납입 등을 통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이 수반된 경우에는 불법의 정도가 가중됨

아. 연대보증 사기

- '당초부터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획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경우', '주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경우',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

이 없지 않으나 다른 기망행위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음

- 피해자인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사기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 피해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채권자에게 귀속되는데, 피해 발생에 대한 채권자 측의 잘못도 고려되어야 함)

자. 알선 사기

- '알선을 빙자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와 '실제로 알선 활동을 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음
- 후자의 경우, 알선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고려되어야 함

차. 유상계약상의 반대급부 사기

- '당초부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획적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편취한 경우'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수령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인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범행의 계획성 외에도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이 주된 양형인자임

카. 보험금 사기

-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를 기화로 과잉진료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지

급 받은 경우’, ‘기왕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이 있음

- 첫 번째 유형의 경우 고의적인 교통사고, 방화, 살해, 상해 등의 다른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결국 그로 인한 부담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보다는 다소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있음

타. 전화금융사기 또는 메신저피싱 사기

- 대부분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나, 간혹 일회성 모방범죄도 있음
- 다만, 범죄조직이 중국 등을 무대로 한 국제적인 조직이어서 국내에서 주범이 검거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임
- 피해자 수가 많고,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다른 사기 보다는 다소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범죄의 특성상 적발되지 않은 범행도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기소된 피해금액만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파. 위임 사기

- 대부분 위임사무 처리 의사와 능력 없이 계획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편취한 경우임
- 범죄의 성격은 배임죄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이 주된 양형인자임

하. 계 사기

- ‘당초부터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획적으로 계불입금을 편

취한 경우’와 ‘당초부터 또는 중간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계불입금을 받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다액인 경우가 보통임
- 범행의 계획성 외에도 피해회복 여부 등이 주된 양형인자임

거. 보조금 사기

- ‘보조금 지급사유에 관한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계획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기망에 의해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이를 관련 사업 또는 사무에 사용한 경우’ 등이 있음
- 국고를 잠식하고 국민에게 최종적인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보다는 다소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있음
-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등이 주된 양형인자임

2. 사기범죄별 형량분포 분석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 대상 : 2004.부터 2008.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의 피고인 14,640명에 대한 사건 중 사기범죄로 분류된 7개 죄명, 4,664명의 피고인
- 조사 방식 : 형사사건기록과 판결문을 직접 대조
- 분석 방법 :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한 카이제곱 검정, 분산분석 및 T-test,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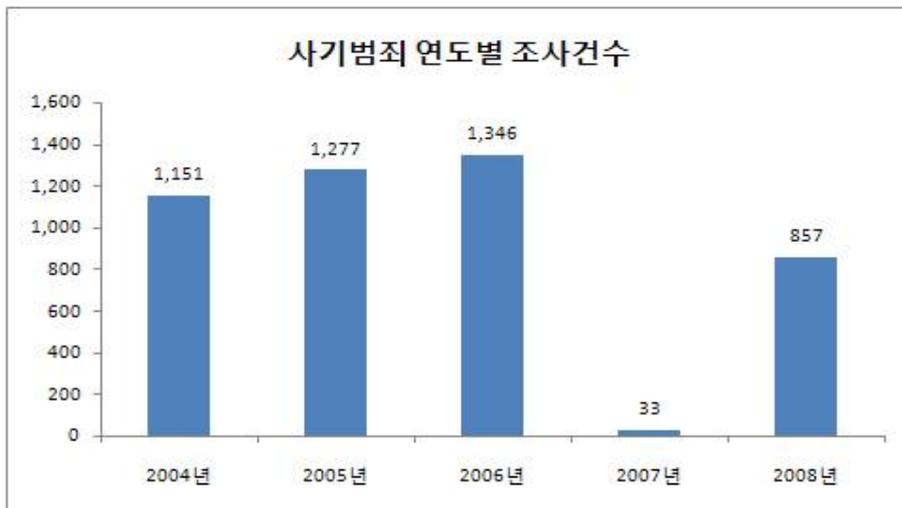
나. 조사결과

1) 범죄현황 및 종국내역

▣ 1심 선고일 기준 연도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세부죄명		연도					전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기	수	1,074	1,190	1,254	0	490	4,008
	비율	26.8%	29.7%	31.3%	0.0%	12.2%	100.0%
사기미수	수	7	10	12	0	78	107
	비율	6.5%	9.3%	11.2%	0.0%	72.9%	100.0%
사기방조	수	1	0	0	0	0	1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상습사기	수	51	54	41	0	73	219
	비율	23.3%	24.7%	18.7%	0.0%	33.3%	100.0%
준사기	수	1	0	0	0	0	1
	비율	100.0%	0.0%	0.0%	0.0%	0.0%	100.0%
컴퓨터등사용사기	수	7	3	22	33	45	110
	비율	6.4%	2.7%	20.0%	30.0%	40.9%	10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수	10	20	17	0	171	218
	비율	4.6%	9.2%	7.8%	0.0%	78.4%	100.0%
전체	수	1,151	1,277	1,346	33	857	4,664
	비율	24.7%	27.4%	28.9%	0.7%	18.4%	100.0%



■ 중국내역

단위: 명

세부죄명		중국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사기	수	1,587	1,638	780	3	4,008
	비율	39.6%	40.9%	19.5%	0.1%	100.0%
사기미수	수	16	63	26	2	107
	비율	15.0%	58.9%	24.3%	1.9%	100.0%
사기방조	수	0	1	0	0	1
	비율	0.0%	100.0%	0.0%	0.0%	100.0%
상습사기	수	181	20	18	0	219
	비율	82.6%	9.1%	8.2%	0.0%	100.0%
준사기	수	1	0	0	0	1
	비율	100.0%	0.0%	0.0%	0.0%	100.0%
컴퓨터등사용사기	수	32	45	32	1	110
	비율	29.1%	40.9%	29.1%	0.9%	100.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수	144	74	0	0	218
	비율	66.1%	33.9%	0.0%	0.0%	100.0%
전체	수	1,961	1,841	856	6	4,664
	비율	42.0%	39.5%	18.4%	0.1%	100.0%

● 중국내역 비율

- 실형 1,961건(42.0%), 집행유예 1,841건(39.5%), 벌금 856건(18.4%)
- 징역형(실형/집행유예) 비율 81.5%

- 실형 비율은 상습사기 181건(82.6%), 특경법(사기) 144건(66.1%)으로 높게 나타남

2) 징역형의 형량분포

■ 전체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사기	1	28	22	251	21	855	14	729	4	456	419	36	10	17	178
	0.0	0.9	0.7	7.8	0.7	26.5	0.4	22.6	0.1	14.1	13.0	1.1	0.3	0.5	5.5
사기미수	0	0	0	8	0	21	0	22	0	10	16	0	0	0	2
	0.0	0.0	0.0	10.1	0.0	26.6	0.0	27.8	0.0	12.7	20.3	0.0	0.0	0.0	2.5
사기방조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상습사기	0	2	1	11	4	52	2	47	0	36	23	1	0	0	14
	0.0	1.0	0.5	5.5	2.0	25.9	1.0	23.4	0.0	17.9	11.4	0.5	0.0	0.0	7.0
준사기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컴퓨터등 사용사기	0	0	0	5	2	20	1	13	2	15	7	0	1	0	5
	0.0	0.0	0.0	6.5	2.6	26.0	1.3	16.9	2.6	19.5	9.1	0.0	1.3	0.0	6.5
형법(사기) 전체	1	30	23	275	27	948	17	811	6	517	467	37	11	17	199
	0.0	0.8	0.6	7.6	0.7	26.4	0.4	22.6	0.1	14.4	13.0	1.0	0.3	0.4	5.5
특경가법 (사기)	0	0	0	1	0	0	0	0	0	1	4	0	0	0	60
	0.0	0.0	0.0	0.5	0.0	0.0	0.0	0.0	0.0	0.5	1.8	0.0	0.0	0.0	27.5
형법, 특경가법 총계	1	30	23	276	27	948	17	811	6	518	471	37	11	17	259
	0.0	0.8	0.6	7.3	0.7	24.9	0.4	21.3	0.2	13.6	12.4	1.0	0.3	0.4	6.8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20	24	27	30	36	38	42	48	60	72	84	120	136	144	
사기	1	104	1	28	29	1	4	11	2	2	0	0	0	1	3,225
	0.0	3.2	0.0	0.9	0.9	0.0	0.1	0.3	0.1	0.1	0.0	0.0	0.0	0.0	100.0
사기미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사기방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상습사기	0	7	0	0	1	0	0	0	0	0	0	0	0	0	201
	0.0	3.5	0.0	0.0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준사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컴퓨터등 사용사기	0	3	0	0	3	0	0	0	0	0	0	0	0	0	77
	0.0	3.9	0.0	0.0	3.9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형법(사기) 전체	1	114	1	28	33	1	4	11	2	2	0	0	0	1	3,584
	0.0	3.1	0.0	0.7	0.9	0.0	0.1	0.3	0.1	0.1	0.0	0.0	0.0	0.0	100.0
특경가법(사기)	0	55	0	25	40	0	6	11	9	2	2	1	1	0	218
	0.0	25.2	0.0	11.5	18.3	0.0	2.8	5.0	4.1	0.9	0.9	0.5	0.5	0.0	100.0
형법, 특경가법 총계	1	169	1	53	73	1	10	22	11	4	2	1	1	1	3,802
	0.0	4.4	0.0	1.4	1.9	0.0	0.3	0.6	0.3	0.1	0.1	0.0	0.0	0.0	100.0

● 전체 사기범죄의 징역형 빈도

- 6월 948건(24.9%) > 8월 811건(21.3%) > 10월 518건(13.6%) > 1년 471건(12.4%) > 4월 276건(7.3%) > 2년 169건(4.4%)

⇒ 1년 이하의 비율이 82.2% 차지

● 형법상 사기범죄의 징역형 빈도

- 6월 948건(26.4%) > 8월 811건(22.6%) > 10월 517건(14.4%) > 1년 467건(13.0%) > 4월 275건(7.6%) > 2년 114건(3.1%)

⇒ 1년 이하의 비율이 87.1% 차지

● 특경법 사기범죄에서의 징역형 빈도

- 2년 55건(25.2%) > 3년 40건(18.3%) > 2년 6월 25건(11.5%) > 4년 11건(5.0%) > 5년 9건(4.1%)

▣ 실형 선고시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사기	1	26	15	120	12	295	9	287	3	222	234	27	9	17	139
	0.1	1.6	0.9	7.6	0.8	18.6	0.6	18.1	0.2	14.0	14.7	1.7	0.6	1.1	8.8

사기미수	0	0	0	1	0	2	0	4	0	3	5	0	0	0	1
	0.0	0.0	0.0	6.3	0.0	12.5	0.0	25.0	0.0	18.8	31.3	0.0	0.0	0.0	6.3
상습사기	0	2	1	10	4	45	2	42	0	33	20	1	0	0	13
	0.0	1.1	0.6	5.5	2.2	24.9	1.1	23.2	0.0	18.2	11.0	0.6	0.0	0.0	7.2
준사기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컴퓨터등 사용사기	0	0	0	1	1	8	1	3	0	5	4	0	1	0	3
	0.0	0.0	0.0	3.1	3.1	25.0	3.1	9.4	0.0	15.6	12.5	0.0	3.1	0.0	9.4
형법(사기) 전체	1	28	16	132	17	350	12	336	3	263	264	28	10	17	156
	0.1	1.5	0.8	7.2	0.9	19.2	0.6	18.4	0.1	14.4	14.5	1.5	0.5	0.9	8.5
특경가법(사 기)	0	0	0	1	0	0	0	0	0	1	4	0	0	0	25
	0.0	0.0	0.0	0.7	0.0	0.0	0.0	0.0	0.0	0.7	2.8	0.0	0.0	0.0	17.4
형법, 특경가법 총계	1	28	16	133	17	350	12	336	3	264	268	28	10	17	181
	0.1	1.4	0.8	6.8	0.9	17.8	0.6	17.1	0.2	13.5	13.7	1.4	0.5	0.9	9.2
세부죄명															전체
	20	24	27	30	36	38	42	48	60	72	84	120	136	144	
사기	1	96	1	23	29	1	4	11	2	2	0	0	0	1	1,587
	0.1	6.0	0.1	1.4	1.8	0.1	0.3	0.7	0.1	0.1	0.0	0.0	0.0	0.1	100.0
사기미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상습사기	0	7	0	0	1	0	0	0	0	0	0	0	0	0	181
	0.0	3.9	0.0	0.0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준사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컴퓨터등 사용사기	0	2	0	0	3	0	0	0	0	0	0	0	0	0	32
	0.0	6.3	0.0	0.0	9.4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형법(사기) 전체	1	105	1	23	33	1	4	11	2	2	0	0	0	1	1,817
	0.1	5.7	0.1	1.2	1.8	0.1	0.2	0.6	0.1	0.1	0.0	0.0	0.0	0.1	100.0
특경가법(사 기)	0	35	0	15	31	0	6	11	9	2	2	1	1	0	144
	0.0	24.3	0.0	10.4	21.5	0.0	4.2	7.6	6.3	1.4	1.4	0.7	0.7	0.0	100.0
형법,	1	140	1	38	64	1	10	22	11	4	2	1	1	1	1,961

특경가법	0.1	7.1	0.1	1.9	3.3	0.1	0.5	1.1	0.6	0.2	0.1	0.1	0.1	0.1	100.0
총계															

● 전체 사기범죄의 징역형 빈도

- 6월 350건(17.8%) > 8월 336건(17.1%) > 1년 268건(13.7%) > 10월 264건(13.5%) > 2년 140건(7.1%) > 4월 133건(6.8%)

⇒ 1년 이하의 비율이 72.9% 차지

● 형법상 사기범죄의 징역형 빈도

- 6월 350건(19.2%) > 8월 336건(18.4%) > 1년 264건(14.5%) > 10월 263건(14.4%) > 2년 105건(5.7%) > 4월 132건(7.2%)

⇒ 1년 이하의 비율이 78.2% 차지

● 특경법상 범죄의 징역형 빈도

- 2년 35건(24.3%) > 3년 31건(21.5%) > 2년 6월 15건(10.4%) > 4년 11건(7.6%) > 5년 9건(6.3%)



■ 집행유예 선고시 분형 형량분포

단위: 명, %

	형량(개월)																전체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8	24	30	36	
사기	2	7	131	9	560	5	442	1	234	185	9	1	39	8	5	0	1,638
	0.1	0.4	8.0	0.5	34.2	0.3	27.0	0.1	14.3	11.3	0.5	0.1	2.4	0.5	0.3	0.0	100.0
사기미수	0	0	7	0	19	0	18	0	7	11	0	0	1	0	0	0	63
	0.0	0.0	11.1	0.0	30.2	0.0	28.6	0.0	11.1	17.5	0.0	0.0	1.6	0.0	0.0	0.0	100.0
사기방조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100.0
상습사기	0	0	1	0	7	0	5	0	3	3	0	0	1	0	0	0	20
	0.0	0.0	5.0	0.0	35.0	0.0	25.0	0.0	15.0	15.0	0.0	0.0	5.0	0.0	0.0	0.0	100.0
컴퓨터등 사용사기	0	0	4	1	12	0	10	2	10	3	0	0	2	1	0	0	45
	0.0	0.0	8.9	2.2	26.7	0.0	22.2	4.4	22.2	6.7	0.0	0.0	4.4	2.2	0.0	0.0	100.0
형법(사기) 전체	2	7	143	10	598	5	475	3	254	203	9	1	43	9	5	0	1,767
	0.1	0.3	8.0	0.5	33.8	0.2	26.8	0.1	14.3	11.4	0.5	0.05	2.4	0.5	0.2	0	100.0
특경가법(사기)	0	0	0	0	0	0	0	0	0	0	0	0	35	20	10	9	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7.3	27.0	13.5	12.2	100.0
형법, 특경가법 총계	2	7	143	10	598	5	475	3	254	203	9	1	78	29	15	9	1,841
	0.1	0.4	7.8	0.5	32.5	0.3	25.8	0.2	13.8	11.0	0.5	0.1	4.2	1.6	0.8	0.5	100.0

● 전체 사기범죄의 징역형 빈도

- 6월 598건(32.5%) > 8월 475건(25.8%) > 10월 254건(13.8%) > 1년 203(11.0%) > 4월 143건(7.8%)

⇒ 1년 이하의 비율이 92.3%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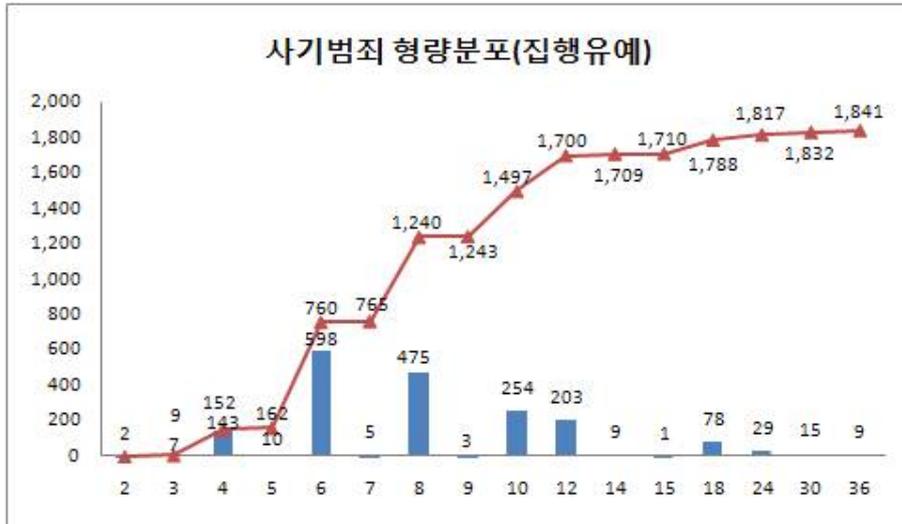
● 형법상 사기범죄의 징역형 빈도

- 6월 598건(33.8%) > 8월 475건(26.8%) > 10월 254건(14.3%) > 1년 203(11.4%) > 4월 143건(8.0%)

⇒ 1년 이하의 비율이 96.2% 차지

● 특경법상 범죄의 징역형 빈도

- 1년 6월 35건(47.3%) > 2년 20건(27.0%) > 2년 6월 10건(13.5%)



▣ 평균형량

단위: 명, 월

세부죄명	실형/집행유예	수	평균(월)	표준편차
사기	실형	1,587	11.554	8.6889
	집행유예	1,638	8.107	3.2498
	합계	3,225	9.803	6.7433
사기미수	실형	16	9.750	3.3367
	집행유예	63	8.032	2.8168
	합계	79	8.380	2.9885
사기방조	집행유예	1	12.000	.
	합계	1	12.000	.
상습사기	실형	181	9.442	4.9792
	집행유예	20	8.500	3.2363
	합계	201	9.348	4.8361
준사기	실형	1	12.000	.
	합계	1	12.000	.

단위: 명, 월

세부죄명	실형/집행유예	수	평균(월)	표준편차
컴퓨터등사용사기	실형	32	12.844	9.1655
	집행유예	45	8.600	3.8459
	합계	77	10.364	6.87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사기)	실형	144	33.375	18.3081
	집행유예	74	23.432	6.2943
	합계	218	30.000	16.0150
합계	실형	1,961	12.968	11.0763
	집행유예	1,841	8.739	4.5563
	합계	3,802	10.920	8.8193